



환경관리 질의응답

사업장폐기물 허가

Q 당사는 1995년도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아서 폐기물을 수집/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감독기관(자치단체)의 지시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따로 받으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1995년도 허가를 받을 시에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처리업을 별도로 구분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생활폐기물허가와 사업장생활계폐기물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허가를 득한 사업장에서도 법령이 바뀌면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A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의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의 기준이 2004.8.11일 개정되었으므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운반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개정된 규정에 적합한 장비를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개정 전의 수집·운반업자는 개정된 규정에 적합하게 장비 등을 갖추어 허가증을 갱신하여야 할 것입니다.

TMS 부착면제 관련

Q 환경부고시제2000-9호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 등의 부착대상사업장 측정항목 및 부착시기 고시개정에서 부착면제에 관련해서... 동 고시 제3조 3항이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 등의 부착시기 전 1년 동안(매월 1회 이상 측정)측정결과가 법 제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부과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하로 항상 배출되는 경우라고 되어있는데요. 자가 측정결과치로 따지는건가요? 그리고 일정기간 측정값의 평균값으로 결정하는건가요? 아니면 한번이라도 기준이상이 되면 TMS를 설치해야하는지요?

A 환경부 고시 제2000-9호의 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788호)으로 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시행령 부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는 바, 부착시기 전 1년 동안의 자가측정결과치는 물론 동 기간에 관할 행정기관에서 측정한 결과치가 있으면 이를 포함하여야 하고 한번이라도 30% 이상으로 배출되었다면 관련 규정에 의거 유예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활성탄여과기 교체에 대해

Q 당사는 다음과 같이 폐수방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명 : 물리화학적 폐수방지시설, 일처리량 : 20 - 30ton, 종류 : 세차 및 청소용수, 기본수질측정항목 : pH, COD, SS, ABS, N-H, T-N, T-P 시설 중에 모래여과기와 활성탄여과기가 있는데 교체하려고 합니다. 교체주기 및 교체방법 등에 관해 법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올립니다.

A 수질환경보전법에서 방지시설에 대한 교체주기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교체사항을 동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일자상 “9. 방지시설 고장유무 및 특기사항”란에 내용을 기재하고, 관할 지도·점검기관에 확인을 받아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TMS 설치관련

Q 산처리시설인 경우(염산만사용) 단위 배출구별 종수나 시설용량에 상관이 있는지요. 예를 들어 사업장 전체는 2종이나 산처리시설(염산사용) 개별종수는 4종일 때도 TMS 설치를 하여야 하는지?

A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종별 기준은 사업장 종규모를 기준으로 하며, 사업장 종별규모가 3종 이상이면서 단위 배출시설별로 정하여진 용량이상일 경우(금속의 표면처리시설로서 산처리시설의 경우 10,000Sm³/시간 이상) 부착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산처



리시설은 염산을 사용하는 시설에 한함을 알려드립니다.

폐수배출시설 설치

Q 판유리를 가공하는 공장을 하자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 과정에서 유리 가공 공정중 발생되는 폐수에 특정 유해물질이 발생되므로 폐수 배출시설 설치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원료인 판유리에 특정 유해물질이 없는데 어찌 특정유해물질이 나오는가 문의 했더니 가공기계의 연마휠에서 원인이 되어 소량 검출된다고 합니다. 기존 연마 훈에는 구리를 원료로 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수소문해 보니 외국에서 생산되는 훈 중에 특정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훈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를 채택하여 특정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아니 한다면 폐수 배출시설 설치가 가능한지요?

A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고시한 「임진강유역배출시설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지정(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5-2호: '05.2.2)」에 따르면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지역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에서 지정 제외되어 있는 바 동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제한받지 않습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2호 규정에 의거 다른 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에 의해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환경관리인 선임기준

Q 대기 3종사업장의 경우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에 보면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1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1명, 그리고 기능사 또는 3년 이상 근무자중에서 1명 이렇게 해서 총 2명을 두라는 의미인지요? 그리고 1,2종 사업장의 경우만 일17시간 이상 가동시에는 2명이상 두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종에도 해당되는 사항인지요? 정리하면, 일17시간 이상 가동하는 대기3종사업장의 경우 선임해야 하는 관리인의 수와 자격기준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A 질의1. 해당 환경기술인 1명을 사업자가 선택하여 선임할 수 있다는 의미임.

질의2. 1,2종 사업장에만 해당됨.

질의3. 대기3종 사업장의 경우 일 조업시간과 관계없이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1인 이상을 선임해야 할 것임. 질문내용의 경우 해당 환경기술인 1명을 선임하면 될 것임.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관련

Q 당사는 폐기물처리업체로서 시간당 2톤 처리능력의 연속식 소각시설을 설치·운영중에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6호「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의 100분의 30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의 변경허가와 관련한 규정 내용중 처리용량의 변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소각시설의 허가받은 처리용량(48톤/일) 대비 130%이상의 폐기물을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여 오염물질 또한 항상 기준 이내로 배출 될 수 있는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의 증설이 없이도 위 규정에 따라 처리능력의 변경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2. 만일 허가변경이 가능하지 않다면 동일시설로 관리 기준에 적합한 운영 범위내에서 현실적으로 소각처리가 가능한 용량(130%이상)만큼의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A 질의1. 시설의 증설(화려자 면적, 연소가스 체류시간 등) 없이는 허가 받은 용량 이상으로 변경허가 받기 어려울 것이나, 소각대상 폐기물의 폐기물 함수율



환경관리 질의응답

변화 등으로 인하여 시설의 증설 없이 폐기물량을 증가하여 소각하더라도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등을 준수할 수 있다고 허가권자가 판단하는 경우 변경허가가 가능할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허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항상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활성탄 처리

Q 현재 폐활성탄이 년 200~300kg 발생하고 있습니다.(일반폐기물)

질의1.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면 300kg/일 이 넘으면 배출자 신고사항이던데 활성탄의 경우도 신고 대상인지요?

질의2. 폐기물 총량의 300kg/일 인지 아님 각각의 폐기물량이 300kg/일 경우 신고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3. 활성탄의 경우 비소, 구리가 미량 검출될경우 가연성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 질의1.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의 배출량이 1일 300kg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폐활성탄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질의2. 가연성 여부는 배출자가 판단하여야 합니다.

지정폐기물처리

Q 질의1. 건설현장 지정폐기물(폐유, 폐강통 등 5% 이상 기름 함유) 발생시 지정폐기물 처리 신고의 주체?

질의2. 각각 월평균 50kg, 월평균 합계 100kg의 산정 방법?

질의3. 소량 지정폐기물을 발생시 해당 시, 군, 구 등이 운영하는 지정폐기물 처리중 평균50kg, 100kg 이상 발생될 경우 지정폐기물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4. 최초 소량이 발생되어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를 하지 않고 상기 3번과 같이 처리 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질의5. 건설현장 협력업체(배출하는자)를 공동으로 원청에서

관리 처리할 경우 각 업체 배출량을 합하여 50kg, 100kg이 넘을 경우 지정폐기물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질의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의 처리증명확인 및 관리 책임은 당해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에게 있습니다.

질의2, 3.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이 월평균(최근 6개월간 총배출량을 6월로 나눈 양으로 산정되며, 조업일수가 없는 월의 경우 제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양 이상 발생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의2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 기본적처리증명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이하로 발생되는 경우 기본적처리증명 확인은 받지 않아도 되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4에서 정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질의4. 지정폐기물 처리증명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 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상품의 정의

Q 제2조의 "친환경상품"의 정의 항목을 보면 가,나,다 항목이 나오는데요

"가"는 환경마크를 취득한 상품

"나"는 GR(우수재활용품인증)마크를 취득한 상품이지만, "다"

"항목은 어떤 품목을 말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항목에 해당하는 친환경상품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은 환경마크 및 GR마크를 취득한 상품 이외에 필요할 경우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친환경상품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폐절연유 폐기에 따른 분석

Q 변압기에 사용되는 절연유의 폐기에 따른 문의사항입니다. 전기사업법의 전기설비기술기준고시에서는 변압기 등 전기장비에 PCBs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PCBs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변압기에 사용되는 절연유 교체시 절연유 납품업체에 검사성적서를 제출토록 요청하여 검사성적서에 PCB의 함유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PCB가 NONE로 명확히 표기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절연유를 폐기시 국내 PCBs 시료분석 가능연구소(4곳)에 의뢰하여야 하나요? 위의 검사성적서로 대체할 수 없는지요?

A 폐변압기 폐기물로 배출하는 경우 각각의 폐변압기마다 발생된 폐절연유의 성분을 폐기물전문분석기관에서 분석하여 PCB 성분을 1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경우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함유 지정폐기물로, PCB가 지정폐기물 기준 이내로 검출되더라도 기름 성분을 5%이상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지정폐기물인 폐유로 분류하여 기본적 처리증명확인 시 폐기물분석결과에 따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함유 폐기물, 또는 폐유로 폐기물의 종류를 명확히 분류하여 기본적 처리증명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방지시설설계 시공업에 관한 건

Q 당사에서 공장에 방지시설 흡착탑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꼭 방지시설업체가 해야 하는지? 아니면 무등록자가 영업 및 설계&시공할 수 있는지? 또는 어느 부분까지 허용이 되는지? 관련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행정처분은 어느 정도지? 수리보수도 안되는지?

A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39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

니하고 방지시설업을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기구류를 신설·대체 또는 개선하는 경우 등은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외의 자가 설계시공이 가능함을 말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수 무방류배출시설에 해당 여부

Q 수질환경보전법 2조(정의) 5의2에 “폐수무방류배출 시설”이라 함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당해 사업장 안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질의1. 폐수를 폐수 수탁업체에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폐수를 해당 공공수역에 방류하지 아니하므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요?

질의2. 만약 폐수무방류 배출시설과 위탁처리의 경우가 다르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A 질의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5의2호에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당해 사업장안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출시설에서 발생된 폐수를 폐수처리업체 등에 전량위탁처리하는 경우 그 시설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질의2. 폐수무방류배출시설과 전량위탁처리의 차이점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당해 사업장에서 처리하거나 동일 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는 등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배출(제3자에게 전량위탁처리 포함)하지 않고 사업장내에서 처리하여야 함이 다른 점입니다. ↗